

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 
민간위탁 동의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031
------	------

2012. 10. 8.  
재정경제위원회

## I 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9월 24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2년 9월 25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41회 임시회】

-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(2012.10.8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토론, 의결(원안가결)

## II . 제안설명의 요지(경제진흥실장 권혁소)

가. 제안이유

- 사회적기업개발센터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독립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.

- 개소 예정인 사회적기업개발센터를 다양한 사회적경제 민간주체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### 1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사회적기업개발센터
- 소재지 :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(舊 질병관리본부내)
- 시설규모 : 1동 1층 일부(1,162m<sup>2</sup>)
- 준공예정일 : 2013. 1월(예정)
- 주요기능
  - 사회적경제 연구조사 및 정책건의, 관련기관·주체간 네트워크 구축
  - 전문가 발굴·지원, 포럼, 인큐베이팅 총괄 등

### 2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2년(2013.1~ 2014.12)
- 위탁업무
  -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·운영
  -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조사, 사업분석·평가
  - 사회적경제 주체간 네트워크사업

-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
- 사회적경제 전문가 발굴·육성
-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 공모 및 사업 수행
-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·홍보
-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소요예산 : 연간 약 3,000백만원
- 수탁기관 선정 방법 : 공개모집(신규)

### 3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-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
- 민간위탁 추진현황 : 신규 민간위탁

### 4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수립된 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다양한 사회적경제 민간주체들의 현장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
- 사회적기업 개발센터의 위상을 서울시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 생태계 조성기관으로 정립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남중)

#### 가.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인건비 지원 위주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서 탈피해 서울시 사회적경제<sup>1)</sup> 전반의 종합적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9월에 개소 예정인 ‘사회적기업개발센터’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임.
- 특히, 지난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심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었던 은평구 구)국립보건원 부지의 종합 활용계획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위탁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취하였음.

#### 나.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추진방향

- 시는 지난 2년간 당면한 실업문제와 사회적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신규 육성 등 588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·발굴해 왔음.

---

1) 시는 실업문제, 빈부격차 문제 등의 현실경제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경제로서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자활공동체,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경제시스템으로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정책에 차용하고 있음.

### 〈표〉 사회경제적조직 육성실적

총 계	서울형예비 사회적기업	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	지역형예비 사회적기업	마을기업
588	411	153	6	66

※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중 48개소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아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에 포함하여 계상하였음.

- ‘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’은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당 평균 약 3억 3천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일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성과를 보여왔으나, 당초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해 기대했던 획기적인 일자리 확충이나 사회서비스 개선에는 한계를 보였음.
-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계획한 ‘사회적기업개발센터(이하 “센터”)’는 사회적기업, 마을공동체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경제 조직을 포괄하여, 업종별·기능별 지원 조직과의 네트워킹 및 업무협력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종합지원기관임.
- 2013년 1월 개소 예정인 센터(구 질병관리본부내, 은평구 녹번동 소재)는 사회적경제 연구조사 및 정책건의, 네트워크 구축, 전문가 발굴·지원, 포럼, 인큐베이팅 총괄, 기업 평가 등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한 총괄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할 예정임.

#### 다. 사회적기업 개발센터의 필요성

- 센터 운영계획에 따르면, 사회적기업, 마을공동체기업, 사회적

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민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- 이에 따라 서울시(이하 “시”)는 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정책적 연계와 조율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임.
- 센터는 사회적경제 연구조사 및 정책건의, 관련기관·주체간 네트워크 구축, 전문가 발굴·지원, 인큐베이팅, 기업 평가 등을 총괄 추진하는 주체로, 사회적경제의 네트워크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적 지원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.
- 시는 센터가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 생태계 조성기관이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게 기능하도록 최대한의 민간 참여를 통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방식을 보장할 계획임.

#### 사회적기업 개발센터의 주요기능

- 공공구매 시장 조성,
  - 공공구매의 활성화 및 구매지원시스템의 운영 등 공공시장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
-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,
  - 서울시 및 자치구별 지역자원조사 및 거버넌스 구축 지원
- 사회적경제 전문가 발굴 육성,
  - 사회적기업, 마을공동체기업, 사회적협동조합 전문가 교육실시
- 지역특화 전문가 발굴 육성,
- 사회적 경제 전문가 발굴 육성,
- 지역특화 시범사업 등 총괄추진,
-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연구조사 및 정책건의,
- 업종별, 기업군별 공동 협력 사업 지원

## 라.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성에 필요한 사업계획부터 센터의 관리운영,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분석·평가, 그리고 사업수행 및 교육·홍보 등 센터 운영 전반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관(官)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는 민·관 자원의 결합 및 민간주체역량을 극대화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.
- 따라서,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전략수립과 실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사회적 경제 민간 주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라 판단됨.
- 또한,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2항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적 근거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.
-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를 통한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 생태계 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 주체의 자생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초기 창립부터 → 인큐베이팅 → 경영컨설팅 → 홍보·마케팅에 이르기 까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원체계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나치게 사회적경제 생태환경 조성이라는 장기적 목표에 치중해 사회적기업이 당면한 경영상의 다양한 현안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3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년 9월 2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독립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.
- 나. 2012년 7월말 현재 총 639개의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 등을 신규 육성 발굴하였으며, 특히 금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협동조합 등 새로운 조직형태의 질적·양적인 성장이 예상되므로,
- 다. 민간영역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
- 소재지 :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(舊 질병관리본부내)
- 시설규모 : 1동 1층 일부(1,162m<sup>2</sup>)

- 준공예정일 : 2013. 1월(예정)
- 주요기능
  -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허브, 사회적경제 연구조사 및 정책건의
  - 전문가 발굴·육성, 포럼, 인큐베이팅 총괄 등

#### 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2년(2013. 1. ~ 2014. 1.)
- 위탁업무
  -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·운영
  -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조사, 사업분석·평가
  - 사회적경제 주체간 네트워크사업,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
  - 사회적경제 전문가 발굴·육성,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 공모 및 사업 수행 등
- 소요예산 : 연간 약 3,000백만원
- 수탁기관 선정 방법 : 공개모집

##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 :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

#### 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지역사회 경제조직과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지자체와 사회적 기업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주체의 수행기관 필요
  - 시에서 직접 운영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 및 관련분야 전문성 부족
-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시민활동 기반위에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연대와 사회적 책임을 연계

#### 마. 공공성 확보방안

- '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'에 시 공무원,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'운영위원회'를 설치하여 중요한 정책결정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시설의 공공성 확보

- 사업화 지원 대상 등을 선정할 때에는 별도의 '선정위원회'를 구성·운영하여 공정성 제고
- 수탁기관에 대하여 정기평가(반기1회)를 실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(경영지원 등)
  -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